

민간경비업의 실태 및 문제점과 건전육성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realities, the issued points and the sound cultivating in the private guarding

김 평 수*, 손 진**

전남도립대학*,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Kim, Pyong-Soo*, Son, Jin**

Jeonnam Provincial College*,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요약

현재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있어서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민간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이다. 본 발표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기해 봄으로써 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논의함으로써 양 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를 위한 논의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발표자는 다음의 제언을 통해 민간경비업의 건전육성을 위한 검토과제로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비용의 경제성, 배치의 신속성, 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배치와 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원적법적지위로 인한 신분상의 갈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와 청원경찰간의 무기휴대의 법적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

I. 서론

청원경찰(請願警察)이든 사인간 계약에 의한 경비(民間警備)든 민간경비라는 대국적 과제에는 다를 바가 없다. 청원 경찰은 안보적 차원을 주전제로 하는데 대하여, 민간경비는 수요자와 민간경비업자간의 도급계약 체결에 의한 도급경비이다. 즉 청원경찰은 「나의 시설은 나의 손으로」 라는 개념이고, 민간경비는 「나의 시설을 남의 손으로」 라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청원경찰법시행령은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업법시행령은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에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민간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경비의 효율화

를 위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에 있어서의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지휘체계는 민간경비업자에 위임되어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업무집행에 있어서 민간경비업자에게는 법집행이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이유로 효율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거의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휘체계, 법집행권한, 임용, 그리고 해임 등의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체제의 운용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기해 봄으로써 그 비효율성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장래 양 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를 위한 논의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I.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과 건전 육성에 관한 검토

1. 지휘체계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장마다 민간경비업자나 청원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경비나 청원경찰 모두 관할 경찰서장의 지도하에 요원들의 근무수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무의 지휘 및 감독은 민간경비의 경우에는 새롭게 신설된 경비지도사가 담당하며,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주가 지정한 유능한 자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2. 배치와 비용

경비업은 허가받은 법인이면 누구나 고객(시설주)의 요청에 의하여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과 민간경비업자는 임의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배치와 청원경찰법시행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배치 및 이동, 배치의 폐지에 의해 배치 혹은 배치폐지가 행해지고 있다. 즉, 시설주(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그 청원경찰의 배치 또는 중지·폐지·감축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지방경찰청장(地方警察廳長)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¹⁾.

1) 그러나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의 자발적인 요청보다는 국가가 지정한 방호시설물의 등급(가·나·다 급)에 의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할 방호시설물의 등급이 크게 완화되어 가고 있다.

3. 신분

경비업법 제6조는 「경비원은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유의하고, 시설주 등의 관리권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이 철저하게 민간인의 신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시행령은 「청원경찰(請願警察)에 대하여서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이라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청원경찰이 명백하게 신분상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며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법은 「청원경찰은 청원주(請願主)와 배치된 기관 및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라고 명시하여 경비구역 내에서의 경비근무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 무기휴대

청원경찰법에 제정 당시의 안보적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무기휴대를 허용해야 했던 청원경찰의 무기휴대는 그 전환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아직도 무기휴대가 필요한 사업장이 존속하고 있음도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가 청원경찰의 무기휴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첨단기술에 의한 기계경비의 발달은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의미를 더욱 가속적으로 퇴색시킬 것이다. 청원경찰의 무기휴대가 민간경비와의 큰 차이점의 하나였으나, 무기를 휴대하게 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어 따라 이원적 운용 체계에 있어서 장애물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던 통합·단일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된 것이다.

III. 결론

민간경비업을 진단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검토과제로서 다음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권을 민간경비업

자에게 위임한 것은 「경비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지휘체계에 의한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이 행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고 경비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경비비용 지출의 측면에서 청원경찰보다는 민간경비가 선호되고 있다(비용의 경제성).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봉급, 제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 등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을 경찰청장이 매년 1월중에 경찰관 중 준경의 것에 준하여 고시, 지급받도록 되어있으며²⁾, 배치의 측면에서 민간경비가 청원경찰보다 용이하다는 점과(배치의 신속성). 관리의 측면에서 민간경비가 청원경찰보다 용이하다는 점이다(관리의 용이성).

셋째,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민간경비원도 아닌 이원적 법적지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의 한계와 신분상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일한 경비시설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청원경찰은 민간경비원에 비해 상대적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경비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청원경찰법에 제정 당시의 안보적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무기휴대를 허용해야 했던 청원경찰의 무기휴대는 그 전환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아직도 무기휴대가 필요한 사업장이 존속하고 있음도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가 청원경찰의 무기휴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첨단기술에 의한 기계경비의 발달은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의미를 더욱 가속적으로 퇴색시킬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2[안전교육] (대통령령 제14352호 1994.8.3)
- [2] 경호학. “김계원”, 진영사, 2010.
- [3] 서진석. “민간경비론”, 진영사, 2010.
- [4] 박병식. “경비업법”, 법률출판사, 1996.
- [5] 박병식. “민간경비론”. 법률출판사, 1996.
- [6] 정진환. “경비업법”, 진영사, 2010.

[7] 최응렬. “민간경비론”, 폴리티아, 2009.

[8] 한국경비협회, 자료, 2009.

2) 그러나 실제지급은 청원경찰 자체가 각 사업장의 소속직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 등이 순경의 경우보다 다소 많이 지급되고 있다.